<붙임4> 사업주 안내문(안)

# ‘22.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

○ ’22.9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**‘22.9.19(월)~9.29(목)** 기간 중 **관할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(www.eps.go.kr)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라며,

- **중소제조업 및 농·축산·어업**의 경우 금번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**총 고용한도인원이 20~25% 상향**(규모별 차등)되고, **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1~2명 상향 조정**되었사오니 **변경된 고용허용 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**하시기 바랍니다.(붙임 참조)

※ 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’22년 하반기 예정되었던 2차례(7월, 10월) 신규 배정을 7월에 통합 배정하고, 신규 쿼터 1만명을 추가하여 ‘22.9월에 4차로 신규 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**금번 신규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** 사업주께서는 **EPS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선택하실** 수 있습니다.

○ 신규 외국인력은 **「점수제」 방식**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,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,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.

○ **결과발표는 10.17(월) 14:00, 16: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** 안내해 드리고, 고용허가제 홈페이지(www.eps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- **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**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**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**해 드리니,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EPS홈페이지(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해)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
* 고용허가서 발급일자: 제조업 10.18(화)~10.20(목)/농축산업·어업·건설업 10.21(금)~10.24(월)

○ 세부사항은 붙임(22.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아울러,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와 금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
- 다만, 송출국가 현지사정 등으로 입국 일정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고 용 노 동 부**

## 붙임 '22.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

### □ 해당업종 : 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

### 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: '22.9.19(월)~9.29(목)

○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<u>내국인 구인노력</u>을 거쳐야 합니다.

○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, 인터넷(www.eps.go.kr)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☞ **유의사항**

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**구인신청은 지방관서(워크넷)를 통해 하셔야** 내국인 채용 시 **가점혜택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**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**

③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**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** 합니다.

- 다만,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
④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○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등을 위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사업주용)를**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○ 외국인근로자를 **'센터 알선' 또는 '직접 선택'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 시에 알선방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- 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EPS홈페이지(www.eps.go.kr)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내에 채용처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.

- 지정된 시간 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안된 경우 지연 사업장 발급시에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, 센터 알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·사업장시설(업무내용)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① **(기숙사 시설표)** 고용허가 신청 시 **'외국인 기숙사 시설표*'**와 함께 증빙자료(사진 또는 동영상)**를 제출(또는 EPS홈페이지 입력)

*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(전 업종 적용)

** (사업장 직접입력) EPS홈페이지 - 고용허가 신청 - 기숙사 시설표

-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, 사업장 건물,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**"가설건축물 신고필증"** 또는 **"건축물대장"** 등을 제출

- 주거시설 정보가 **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**을 통해 **시설기준 확인**하여 **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**

② **(사업장 시설)** 사업장 전경,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 내용의 시각자료(사진 또는 동영상)를 제출(또는 EPS홈페이지에 입력*)

* (사업장 직접입력) EPS홈페이지 - 고용허가 신청 -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

**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됨

## □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: 10.4(화)~10.14(금)

○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.

*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

○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,

-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,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.

○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.

## □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: 10.17(월) 14:00, 16:00

○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(직접선택한 경우)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,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.

* 안내 방법: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(www.eps.go.kr)

## □ 고용허가서 발급: 제조업 10.18(수)~10.20(금)

**건설업, 농축산업, 어업 10.21(금)~10.24(월)**

○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(직접선택한 경우)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○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,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,

-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·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□ 대기순번 처리

○ 고용허가서 취소·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
○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## <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>

□ **기본 항목 (4개)**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(22.4～30점)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('19.2월～7월 까지 6개월간)가 많을수록(22.4～30점)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(제조업: 19～20점, 소수업종: 15～20점)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(내국인)를 많이 고용할수록(제조업: 14～20점, 소수업종: 18～20점) 높은 점수 부여

□ **가점 항목 (7개)** ①농축산업・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(0.5～2.5점), ②우수 기숙사 설치·운영 사업장(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), ③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(2.5점), ④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(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), ⑤ 귀국비용보험,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(1.5점), ⑥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18001) 인증 사업장(각1.5점) ⑦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-117호, '21.12.28)의 지원대상 사업장(10점, '22년 하반기 한시적 적용)

□ **감점 항목 (9개)** ①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(10점)②성폭행, 폭행, 폭언, 성희롱,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(성폭행 10점, 성희롱 10점, 폭언・폭행 6점, 임금체불・근로조건 위반 5점),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(성폭행 10점, 성희롱 5점, 폭언・폭행 6점, 임금체불・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), ④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·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(건당 0.5～5점), ⑤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(1인당 1～5점), ⑥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(최대 10점, 1년간 감점), ⑦기숙사 정보 미제공(미제출)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(각 3점, 1년간 감점), ⑧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(각 3점), ⑨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(1～5점)

□ **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:** ①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②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③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④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⑤전산추첨

## 붙임 업종별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발급한도 개편 내용

### ❶ 제조업·광업

| 개편 전 | | | 개편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내국인 피보험자 수 | 총 고용허용인원 | 신규발급한도 | 내국인 피보험자 수 | 총 고용허용인원 | 신규발급한도 |
| 1명 이상 5명 이하 | 5명 | 3명 | 1명 이상 10명 이하 | **9명** (단,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5를 더한 값으로 하되, 최대 9명을 초과하지 못함) | **4명** |
| 6명 이상 10명 이하 | 7명 | | | | |
| 11명 이상 30명 이하 | 10명 | 4명 | 11명 이상 50명 이하 | **15명** (단,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초과하지 못함) | **5명** |
| 31명 이상 50명 이하 | 12명 | | | | |
| 51명 이상 100명 이하 | 15명 | 5명 | 51명 이상 100명 이하 | **17명** | **6명** |
| 101명 이상 150명 이하 | 20명 | | 101명 이상 150명 이하 | **20명** | |
| 151명 이상 200명 이하 | 25명 | 6명 | 151명 이상 200명 이하 | **25명** | **7명** |
| 201명 이상 300명 이하 | 30명 | | 201명 이상 300명 이하 | **30명** | |
| 301명 이상 | 40명 | | 301명 이상 | **40명** | |

※ 제조업·광업의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관련, 위에서 개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름

## ❷ 농축산업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업종 ＼ 규모</th><th colspan="5">영농규모별 (단위 : ㎡)</th></tr>
<tr><td rowspan="6">작물재배업<br>(011)</td><td>시설원예·특작</td><td>4,000~6,499</td><td>6,500~11,499</td><td>11,500~16,499</td><td>16,500~21,499</td><td>21,500 이상</td></tr>
<tr><td>시설, 버섯</td><td>1,000~1,699</td><td>1,700~3,099</td><td>3,100~4,499</td><td>4,500~5,899</td><td>5,900 이상</td></tr>
<tr><td>과 수</td><td>20,000~39,999</td><td>40,000~79,999</td><td>80,000~119,999</td><td>120,000~159,999</td><td>160,000 이상</td></tr>
<tr><td>인삼, 일반채소</td><td>16,000~29,999</td><td>30,000~49,999</td><td>50,000~69,999</td><td>70,000~89,999</td><td>90,000 이상</td></tr>
<tr><td>콩나물·종묘재배</td><td>200~349</td><td>350~649</td><td>650~949</td><td>950~1,249</td><td>1,250 이상</td></tr>
<tr><td>기타원예·특작</td><td>12,000~19,499</td><td>19,500~34,499</td><td>34,500~49,499</td><td>49,500~64,499</td><td>64,500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축산업<br>(012)</td><td>젖 소</td><td>1,400~2,399</td><td>2,400~4,399</td><td>4,400~6,399</td><td>6,400~8,399</td><td>8,400 이상</td></tr>
<tr><td>한육우</td><td>3,000~4,999</td><td>5,000~8,999</td><td>9,000~12,999</td><td>13,000~16,999</td><td>17,000 이상</td></tr>
<tr><td>돼지</td><td>1,000~1,999</td><td>2,000~3,999</td><td>4,000~5,999</td><td>6,000~7,999</td><td>8,000 이상</td></tr>
<tr><td>말·엘크</td><td>250~499</td><td>500~999</td><td>1,000~1,499</td><td>1,500~1,999</td><td>2,000 이상</td></tr>
<tr><td>양계</td><td>2,000~3,499</td><td>3,500~6,499</td><td>6,500~9,499</td><td>9,500~12,499</td><td>12,500 이상</td></tr>
<tr><td>양봉</td><td>100~199군</td><td>200~299군</td><td>300~399군</td><td>400~999군</td><td>1,000군 이상</td></tr>
<tr><td>기타축산</td><td>700~1,699</td><td>1,700~3,699</td><td>3,700~5,699</td><td>5,700~7,699</td><td>7,700 이상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(014)</td><td>내국인 피보험자 1~10명</td><td>-</td><td>내국인 피보험자 11~50명</td><td>내국인 피보험자 51~100명</td><td>내국인 피보험자 100명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총 고용허용 인원</td><td>개편 전</td><td>5명</td><td>8명</td><td>10명</td><td>15명</td><td>20명</td></tr>
<tr><td>개편</td><td>7명</td><td>10명</td><td>12명</td><td>15명</td><td>20명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신규 발급한도</td><td>개편 전</td><td>2명</td><td>2명</td><td>3명</td><td>3명</td><td>4명</td></tr>
<tr><td>개편</td><td colspan="5">4명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비고</td><td>개편 전</td><td colspan="5">※ 젖소 900~1,400㎡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,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<br>※ 한육우 1,500~3,000㎡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<br>※ 시설원예·특작 2,000~4,000㎡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2명 인정<br>※ 양계 1,000~2,000㎡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<br>※ 양돈 500~1,000㎡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 발급한도 1명 인정<br>※ 시설원예·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</td></tr>
<tr><td>개편</td><td colspan="5">※ 젖소 900~1,400㎡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,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<br>※ 한육우 1,500~3,000㎡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<br>※ 시설원예·특작 2,000~4,000㎡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모두 4명 인정<br>※ 양계 1,000~2,000㎡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<br>※ 양돈 500~1,000㎡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4명 및 신규 발급한도 2명 인정<br>※ 시설원예·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5명까지 인정</td></tr>
</table>

※ 농축산업의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관련, 위에서 개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름

## ❸ 연근해어업

| 연근해 어업의 종류 | 총 고용허용인원 | | 신규 발급한도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개편 전 | 개편 | 개편 전 | 개편 |
| 소형선망어업, 근해채낚기어업, 근해자망어업, 근해안강망어업, 근해봉수망어업, 근해자리돔들망어업, 근해장어통발어업, 근해문어단지어업, 근해통발어업, 근해연승어업, 근해형망어업, 연안선인망어업, 연안통발어업, 연안자망어업, 연안복합어업 | 척당 4명으로 하되, 전체 어선원의 **50%**를 초과할 수 없음 | 척당 4명으로 하되, 전체 어선원의 **60%**를 초과할 수 없음 | 척당 3명으로 하되, 전체 어선원의 **40%**를 초과할 수 없음 | 척당 3명으로 하되, 전체 어선원의 **50%**를 초과할 수 없음 |
| 기선권현망어업, 정치망어업 | 척당 4명으로 하되, 전체 어선원의 **50%** 초과 불가<br>다만,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, 정치망어업은 3명 | 척당 4명으로 하되, 전체 어선원의 **60%** 초과 불가<br>다만,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, 정치망어업은 3명 | 척당 3명으로 하되, 전체 어선원의 **40%** 초과 불가<br>다만,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, 정치망어업은 3명 | 척당 3명으로 하되, 전체 어선원의 **50%** 초과 불가<br>다만,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8명, 정치망어업은 3명 |
| 연안개량안강망어업, 연안선망어업, 연안들망어업, 연안조망어업, 잠수기어업, 구획어업 | 척당 **2명**으로 하되, 전체 어선원의 **50%**를 초과할 수 없음 | 척당 **4명**으로 하되, 전체 어선원의 **60%**를 초과할 수 없음 | 척당 **2명**으로 하되, 전체 어선원의 **40%**를 초과할 수 없음 | 척당 **3명**으로 하되, 전체 어선원의 **50%**를 초과할 수 없음 |

※ 연근해어업의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관련, 위에서 개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름

## ❹ 양식어업

| 면허(허가,신고) 종 류 | 양식어업의 종 류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총 고용 허용인원 | 개편 전 | 3명 | 5명 | 7명 |
| | | | 개편 | 5명 | 7명 | |
| | | 신규 발급한도 | 개편 전 | 2명 | 3명 | 4명 |
| | | | 개편 | 3명 | 4명 | |
|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(해조류양식업) | 수하식양식업 | 면적 | | 199,999㎡ 이하 | 200,000 ~ 299,999㎡ | 300,000㎡ 이상 |
| | 바닥식양식업 | 면적 | | 99,999㎡ 이하 | 100,000 ~ 199,999㎡ | 200,000㎡ 이상 |
|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~5호 (패류양식업) (어류등양식업) (복합양식업) (협동양식업) |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| 면적 | | 19,999㎡ 이하 | 20,000 ~ 39,999㎡ | 40,000㎡ 이상 |
| | 바닥식양식업 | 면적 | | 99,999㎡ 이하 | 100,000 ~ 199,999㎡ | 200,000㎡ 이상 |
| |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| 면적 | | 9,999㎡ 이하 | 10,000 ~ 14,999㎡ | 15,000㎡ 이상 |
|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(육상해수양식업) |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| 면적 | | 6,600㎡ 이하 | 6,601 ~ 8,250㎡ | 8,251㎡ 이상 |
| | 육상축제식양식업 | 면적 | | 9,999㎡ 이하 | 10,000 ~ 14,999㎡ | 15,000㎡ 이상 |
|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(수산종자생산업) | 육상종자생산업 | 면적 | | 990㎡ 이하 | 991 ~ 1,652㎡ | 1,653㎡ 이상 |
| | 해상종자생산업 | 면적 | | 59,999㎡ 이하 | 60,000 ~ 99,999㎡ | 100,000㎡ 이상 |
|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| 육상양식업 | 면적 | | 6,600㎡ 이하 | 6,601 ~ 8,250㎡ | 8,251㎡ 이상 |

※ 양식어업의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관련, 위에서 개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름

<붙임5>

#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

**❖ 작성방법**

- 외국인근로자에게 **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**하여 **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**하여야 합니다.(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 제2항)
- 기숙사 내 시설을 **해당 항목별**로 **기재 또는 ☑로 표시**하여 주십시오.
  (화장실, 세면·목욕시설, 난방시설, 냉방시설, 채광·환기시설의 **종류는 중복 체크** 가능)
- **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·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**

**❖ 유의사항**

-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**허위 기재**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**사업장 변경** 및 **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**을 적용합니다.
-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**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**는 반드시 **해당 근로자의 동의**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**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** 합니다.
- 「근로기준법」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*❖ 사업주 준수사항(「근로기준법」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)**

① **(기숙사 설치 장소) 소음이나 진동**이 심한 장소, **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** 우려, **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**, **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**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

② **(침실의 구분) 여성과 남성,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** 간에 **서로 다른 침실**을 제공

③ **(침실의 기준) 개인당 2.5㎡ 이상**의 넓이 보장, **1실의 거주인원은 8명 이하**

④ **(필수 시설) 화장실 및 세면·목욕시설**, 적절한 **냉·난방** 설비 또는 기구, **채광·환기**를 위한 적절한 설비, **「소방법」 및 관계법령**에 따른 **화재예방** 등 설비 또는 장치, 수납시설 설치

⑤ **(잠금 장치)** 기숙사의 침실,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**적절한 잠금장치**를 설치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**① 사 업 체** | 사업장명 | | 업 종 | |
| | 대 표 자 | | 소 재 지 | |
| | 사 업 장 등 록 번 호<br>( 생 년 월 일 ) | | | |

| | |
|---|---|
| **② 주거시설** | ☐ 주택(단독, 연립, 아파트, 원룸형 주택 등) ☐ 고시원 ☐ 오피스텔 |
| | ☐ 숙박시설(여관, 호스텔, 펜션 등) |
| | ☐ 가설 건축물(☐ 컨테이너 ☐ 조립식 패널) |
| | ☐ 사업장 건물 ☐ 기타 ( ) |

**❖ 세부 작성방법**

- **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**에 ☑표시하되, **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**에 ☑표시(예: 단독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원룸형 주택 → 주택)

| | |
|---|---|
| **③ 설치금지 장 소** | ☐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<br>☐ 산사태,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<br>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<br>☐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|

**❖ 세부 작성방법**

-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장소에 ☑표시하되, **해당 없는 경우 미표시**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④ 침 실 | ① 남녀구분 | □ 남녀 구분 | □ 남녀 미구분 |
| | ② 근 무 조 | □ 근무조 있음 (□ 조별 구분 □ 미구분) | □ 근무조 없음 |
| | ③ 침실면적 | □ 1인별 2.5㎡ 이상 | □ 1인별 2.5㎡ 미만 |
| | ④ 침실높이 | □ 2m 이상 □ 1.5m ~ 2m | □ 1m ~ 1.5m □ 1m 미만 |
| | ⑤ 거주인원 | 침실 1개 당 ( ) 명 | |
| | ⑥ 수납공간 | □ 있음 | □ 없음 |
| | ⑦ 잠금장치 | □ 있음 | □ 없음 |

❖ **세부 작성방법**
- 침실구분: **층 또는 벽**으로 **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**
- 근무조: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⑤ 화 장 실 | ① 유 무 | □ 있음 | □ 없음 |
| | ② 종 류 | □ 수세식 | □ 재래식 |
| | ③ 위 치 | □ 숙소 내부 | □ 숙소 외부 |
| | ④ 잠금장치 | □ 있음 | □ 없음 |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⑥ 세면 및 목욕시설 | ① 유 무 | □ 있음 | | □ 없음 |
| | ② 종 류 | □ 입식세면대 | □ 샤워시설 | □ 욕조 □ 기타( ) |
| | ③ 위 치 | □ 숙소 내부 | | □ 숙소 외부 |
| | ④ 온 수 | □ 온수 사용가능 | | □ 온수 사용불가 |
| | ⑤ 잠금장치 | □ 있음 | | □ 없음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⑦ 난방시설 | ① 유 무 | □ 있음 | □ 없음 |
| | ② 종 류 | □ 보일러 난방(건식온수난방 포함) | □ 전기필름·전기패널 |
| | | □ 연탄보일러 | □ 재래식 온돌 |

❖ **세부 작성방법**
-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**전기장판,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**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⑧ 냉방시설 | ① 유 무 | □ 있음 | | □ 없음 |
| | ② 종 류 | □ 선풍기 | □ 에어컨 | □ 기타( ) |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⑨ 채광 및 환기시설 | ① 유 무 | □ 있음 | | □ 없음 |
| | ② 종 류 | □ 개폐형 창문 | □ 폐쇄형 창문**(환풍기 설치)** | □ 기타( ) |

| | |
|---|---|
| ⑩ 소방시설 | □ 소방시설 설치(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) □ 소방시설 미설치 |

❖ **세부 작성방법**
-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, 하나라도 없으면 미설치에 표시

20 . . .

대 표 자 성 명: (인)

<붙임6>

#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용)

(사업주) 성　　명 :
생년월일 :

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해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| 수집·이용 목적 | 수집·이용 항목 |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|
|---|---|---|
|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관리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 | 성명(사업장명) | 고용허가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 |
| |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| |
| | · 임금체불 등「근로기준법」위반 여부<br>·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위반 여부<br>·「산업안전보건법」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 | |

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용허가제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□동의합니다 / □동의하지 않습니다.

20　　년　　월　　일

사업장명:　　동의자(사업주):　　(서명 또는 인)

## 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